

트러스톤 코스닥벤처 공모주 리츠 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파생형] (펀드 코드: DI783)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트러스토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변동위험,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트러스톤 코스닥벤처 공모주 리츠 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파생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공모주를 포함한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20% 이하를 투자하여 IPO 투자를 주전략으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면서 Post-IPO 투자 및 리츠 투자로 추가수익 획득을 추구합니다. 또한 벤처기업 의무 보유 비중에 따른 시장위험은 코스닥 150 선물매도로 축소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혼합-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이내	1.245%	0.60%	0.840	230	364	503	798	1,6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1.645%	1.00%	1.350	173	352	536	923	2,007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내	0.945%	0.30%	0.440	149	252	359	586	1,23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145%	0.50%	0.990	120	245	375	650	1,432

(주) 1,000 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 종류 A 형과 종류 C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기는 약 3년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충기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7~28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동종유형 출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출보수비율을 의미합니다.(2023.4.28 기준)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23/05/0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2022/05/10 ~ 2023/05/09	2021/05/10 ~ 2023/05/09	-	-	
	비교지수(%)	2021.5.10	2.38	-2.29	-	-	-2.29
	수익률 변동성(%)		2.28	0.06	-	-	0.06
			11.30	11.19	-	-	11.19

(2023.4.30 기준/ 단위 : 개, 억원, %)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혼합파생형)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장주은	1992년	주식책임 운용전문인력 (대리)	4	1,174	-1.50	-	-1.50	-	5년 1개월							
	전춘봉	1980년	채권책임 운용전문인력 (부장)	23	7,282	-1.50	-	-1.50	-	5년 1개월							
<p>(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p> <p>(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입니다.</p> <p>(주 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투자원본 손실위험</td> <td>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td> </tr> <tr> <td>공모주 투자위험</td> <td>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공모주에 투자합니다. 공모주(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는 기존의 주식보다 큰 가격변동성을 지녔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가격변동으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 </tr> <tr> <td>코스닥 투자위험</td> <td>이 투자신탁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및 코스닥 공모주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비해 재무상황 및 경영기반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등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으므로 유동성 및 시장, 신용위험 등의 측면에서 매우 큰 위험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코스닥 공모주 등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비해 변동성은 매우 높은 반면 유동성은 매우 낮을 수 있어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td> </tr> </tbody> </tabl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공모주에 투자합니다. 공모주(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는 기존의 주식보다 큰 가격변동성을 지녔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가격변동으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공모주에 투자합니다. 공모주(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는 기존의 주식보다 큰 가격변동성을 지녔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가격변동으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및 코스닥 공모주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비해 재무상황 및 경영기반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등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으므로 유동성 및 시장, 신용위험 등의 측면에서 매우 큰 위험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코스닥 공모주 등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비해 변동성은 매우 높은 반면 유동성은 매우 낮을 수 있어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투자위험	<p>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벤처기업 주식 등에 일부 투자함으로써 해당 증권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으며, 또한 벤처기업 투자에 따른 다양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p> <p>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고도의 첨단기술이나 장래성은 있지만 재무상황, 경영자의 시장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등 경영기반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인 상장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여 유동성 및 시장, 신용위험 등의 측면에서 매우 큰 위험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의 주식(신주 및 상장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포함) 등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이 부족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며 이로 인해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즉시 현금화하기 곤란하여 대량환매 시 기준가 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원금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세제혜택 관련 위험	<p>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설정 또는 환매 등의 사유 및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세제혜택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인정하는 유예기간 이후에도 비율 충족을 못할 경우 소득공제 등 관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p> <p>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 펀드 처리 방안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p>
	비상장주식 위험	<p>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에 따라 상장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전환우선주, 상환전환 우선주 등을 포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하여 유동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필요시 매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적정 가격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공정가격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p>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 미적용 위험	<p>이 투자신탁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코스닥 공모주의 25%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투자신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p>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p>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 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p>
	비교지수와 수익률 괴리 가능성	<p>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 투자신탁이 아닙니다. 비교지수의 업종 구성 및 종목 비중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교지수와의 수익률 괴리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p>
	파생상품 투자위험	<p>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p>
	유동성위험	<p>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코스닥 및 벤처기업주식(신주 및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포함), 코스닥 및 공모주 등에 투자할 예정으로 유동성 제약이 있는 증권 등이 편입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품들은 때때로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어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즉시 현금화하기 곤란하거나 대량 환매시 기준가 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원금 대비 손실이 발생하는 등 집합투자재산에 매우 부정적인 여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p>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p>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p>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p>당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편입 펀드에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p>
	환매연기위험	<p>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p>
	대량환매 위험	<p>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수익증권 및 잔존 수익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p>

	자의 투자원금액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환매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 시 30 분 이전: 2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15 시 30 분 경과후 :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3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환매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 시 30 분 이전: 2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 영업일에 지급 15 시 30 분 경과후 :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 영업일에 지급 																		
기준가	<table border="1"> <tr> <td>산정방법</td><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td></tr> <tr> <td>공시장소</td><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td></tr> </table>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관한 과세																					
과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 colspan="2">주요내용</th></tr> </thead> <tbody> <tr> <td>근거</td><td colspan="2">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 조</td></tr> <tr> <td>계약 기간</td><td colspan="2">3년 이상</td></tr> <tr> <td>세제 혜택</td><td colspan="2"> <p>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거주자 1인당 300만원 한도)</p> <p>* 300만원 =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한도(3천만원) × 소득공제율(10%)</p> </td></tr> <tr> <td>소득공제 방법</td><td colspan="2"> <p>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판매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소득세법」제 73 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투자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 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그 외의 투자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함</p> </td></tr> <tr> <td>감면세액 추징</td><td colspan="2" rowspan="2"> <p>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투자자가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그 투자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투자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추징.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자 본인 사망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천재, 자연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 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td></tr> </tbody> </table>			구 분	주요내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 조		계약 기간	3년 이상		세제 혜택	<p>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거주자 1인당 300만원 한도)</p> <p>* 300만원 =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한도(3천만원) × 소득공제율(10%)</p>		소득공제 방법	<p>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판매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소득세법」제 73 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투자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 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그 외의 투자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함</p>		감면세액 추징	<p>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투자자가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그 투자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투자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추징.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자 본인 사망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천재, 자연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 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구 분	주요내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 조																				
계약 기간	3년 이상																				
세제 혜택	<p>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거주자 1인당 300만원 한도)</p> <p>* 300만원 =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한도(3천만원) × 소득공제율(10%)</p>																				
소득공제 방법	<p>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판매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소득세법」제 73 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투자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 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그 외의 투자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함</p>																				
감면세액 추징	<p>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투자자가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그 투자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투자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추징.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자 본인 사망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천재, 자연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 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p style="color: red;">※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 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트러스톤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630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truston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모집규모를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효력발생일	2023. 6. 2.	존속 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39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고액 (I)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제 13 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30 억 이상인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Wrap Account(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